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해설서

본 표준계약서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등(이하 “공공계약법령 등”이라 함)의 용역계약 관련 규정과 기준을 원·준용하여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계약의 가장 기본적 내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조는 본 표준계약서 제정 목적을 밝히는 조항으로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게 규정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또한, 본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과 계약상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참조 법령체계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현안에 대한 해석의 방향과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조는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의 계약관계를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규정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본 표준계약서 제정 목적과 취지가 국제회의용역 계약업무의 체계성,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통적인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이 ‘목적’ 조항은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 표준계약서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표준계약서 활용은 적용 대상 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른 계약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제2조(적용방법 및 우선순위)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본 계약서에 제4조의 계약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과 제4조에 따라 첨부된 계약문서의 계약조

건이 상충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국가계약 일반조건”이라 함)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지방계약 일반조건”이라 함)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서는 제1조에 따른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회의 또는 기타 행사대행 용역 등에도 이 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에 있어 본 표준계약서의 법률상 효력과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특수 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간 효력 판단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복수의 계약문서에서 동일한 계약조건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상위 계약법령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수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으로서 국제회의용역과 유사한 과업 내용 및 이행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회의, 기타행사대행용역 등에도 이 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는 본 표준계약서와 첨부된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되거나 적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석과 해결을 위한 방향과 기준으로서 본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제회의용역과 유사한 과업 내용 및 이행 특성을 보유한 국내회의(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의 ‘국제회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국제회의도 포함), 기타행사대행용역 등 MICE분야의 다양한 용역에서도 이 계약서를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또는 지방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국제회의용역”이란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 “발주기관”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지방계약법의 시행규칙 제2조에 준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소속기관을 말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56호)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도 발주기관에 포함된다. 이 계약서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기본과업”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 및 계약체결시점 기술협상 등을 통해 합의 조정된 업무를 말한다.
5. “추가과업”이라 함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과업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 대상의 용역개요,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7.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시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라 함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역수행 내용, 방법, 절차, 인력투입, 예산사용 등 용역수행계획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9.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 시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예산(사업비) 사용 계획으로 계상비목별 세부비목 및 예상집행내역 등에 따른 수량, 인원, 단가, 금액이 명기된 자료를 말한다.
10. “사후정산”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을 계약완료시점에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방법을 적용하여 지급대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본 계약서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수월성 보장을 위해 대가지급 시점에 상계처리하는 것은 사후정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11. “행사인력”이라 함은 본 국제회의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상 참여율을 100%로 환산한 인건비(기준단가(월임금), 퇴직급여부담금 및 상여금 포함)를 기준으로 참여율과 인건비를 산정 및 적용한 인력으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인건비)비목으로 계상되는 인력을 말한다.
12. “현장인력”이라 함은 본 국제회의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 본 용역과 관련한 행사의 실무적, 전문적 진행을 위해 행사기간 중 단기 고용하는 인원으로 산출내역서상 경비비목으로 계상되는 인력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라 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급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행사기간 중 현장인력 등을 단기간 직접 고용하여 특정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은 하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협력업체”라 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에 포함하여 평가받은 수급사업자로 계약 이행을 위해 담당 과업과 대가를 확정하여 반영한 방송, 음향, 조명 등 분야별 전문용역제공업체를 말한다.
15. “부당한 인력파견”이라 함은 국제회의용역이 「과건근로자에 관한 법률」(이하 “과건

법”이라 함)에 따른 과건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행사 및 현장인력이 행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발주기관의 사무실 또는 지정장소 등에서 발주기관의 직간접적인 지휘와 관여 등 관리 아래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모든 형태(행사인력 전부의 근무지 이동 또는 계약상대자의 자발적 파견 등)의 인력투입을 말한다.

16. “분리발주”라 함은 본 계약서의 계약내용과 연관된 과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기관이 직접 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전 집행한 과업으로서 본 계약이행 시 이와 관련한 유지, 관리, 수정 및 보완 등의 연관업무 진행소요를 유발하는 집행방식을 말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는 다양한 유형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국제회의용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법률, 계약관례 및 실무상의 용어를 통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계약상 명확한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의 발주기관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적용되는 계약법이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으로 상이하다. ▪ 이로 인해 발주기관별 계약규정 또는 개별 국제회의용역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계약법령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상이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는 국제회의용역 등에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의 규정, 계약이행 및 관리에 있어 주요하게 언급되는 16개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제3호는 국제회의용역과 계약당사자로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미 제시 - 제4호~제8호는 국제회의용역 과업내용과 관련한 각 문서의 의미 제시 - 제9호는 계약상대자 입장에서 용역 이행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제시 - 제10호는 확정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 이후 정산하는 행위에 대한 계약법령 상의 정의 명시 - 제11호~제12호는 국제회의용역 이행과 관련한 투입인력을 행사기획,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이행과 행사 진행에 필요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단기고용 인력으로 구분하여 제시 - 제13호~제14호는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분야별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외의 협업이 필수적인 바, 그 법률적 계약관계로서 하도급과 이러한 하도급 관계에 대한 국제회의용역에서 관리 특성을 고려한 협력업체 개념 제시 - 제15호는 발주기관에 의한 위법한 인력 파견에 해당하는 내용 제시 - 제16호는 당해 국제회의용역의 과업 내용 중 별도로 선행 집행한 과업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점 제시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계약서는 별지 1에 따르며, 산출내역서는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과 본 계약서에 정한 계약조건 외에 별도의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별도의 특수조건이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과 상충할 때에는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우선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특수조건이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인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계약문서의 상호보완적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계약법령 등의 규정 위반과 상호모순적 이행조건 등이 동시에 효력을 다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공공부문 일반용역계약에서 계약서에 부속되는 계약문서로서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문서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제2조와 연계하여 효력 적용 우선순위를 명시함으로써 공공계약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특약으로 무효화 되는 규정 등이 계약문서 내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는 계약문서로서 본 표준계약서에 첨부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계약문서 목록과 내용적 측면에서의 계약조건 모두 본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휘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지닌 복수의 문서에 기존 발주 및 계약관리 관례 등에 따른 부당특약적 조건을 추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계약당사자간 특수조건을 설정한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부당특약인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4조의2(계약의 내용 및 기간)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제4조 계약문서에 따른 과업내용서에 따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발주기관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통해 확정된 과업내용을 포함한다.

②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제4조 계약문서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발주기관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통해 확정된 계약기간에 따른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업내용 중 대관비, 식·음료비, 초청비, 항공권, 홍보비 등을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분리발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관련된 과업을 본 계약

의 과업내용으로 포함할 수 없다. 단, 제6조에 따른 계약금액에 분리발주한 과업에 상응하는 대가를 포함하고 이를 산출내역서에 별도 집행비목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의2는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 이행 내용의 기준점을 제시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자의적, 임의적으로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또한, 계약내용의 확정에서 본 계약서의 계약내용과 연관된 과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기관이 직접 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전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본 계약이행 시 이와 관련한 유지, 관리, 수정 및 보완 등의 연관업무를 대가 없이 지원토록 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분리발주 과업과 관련한 과업 내용 확정에 대한 기준점도 제시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의2는 최초 과업 내용은 과업내용서,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는 기술협상서와 가격협상서가 과업 내용 및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제2조제16호에 따른 분리발주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된 과업과 관련된 수행내용을 당해 국제회의용역 계약의 과업 내용으로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대가를 당해 용역의 과업 내용에 대한 대가와 분리하여 편성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5조(통지) ① 계약당사자간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함)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단, 긴급한 통지 및 계약이행의 수월성 보장을 위해 계약당사자간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통지의 내용이 전달 및 교환된 경우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문서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전자우편의 경우 이메일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통지의 효력발생일 이전 통지에 따른 과업의 변경, 추가 등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는 계약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를 가정한 사법상 계약으로서 공공(국가 또는 지방)계약임에도 실질적인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에 의해 당초 계약내용이 구두상 요구로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의사소통 과정 및 결과로서 계약 변경 내용 등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부인하거나 해석을 달리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실질적인 계약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요인(과업 변경, 계약 금액 조정, 기타 협의사항)과 효력 기준일을 공식화하여 추후 대가 산정 또는 분쟁 시 권리와 의무부담 관련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 해설

- 제5조는 국제회의용역 이행과정에서 용역수행계획에 기반하여 공식/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보고, 지시, 협의, 요청, 승인 등 전반적인 의사소통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통지 방법은 문서 활용이 원칙이나, 긴급히 진행되는 용역 이행과정에서는 구두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 경우 추후 문서로 보완할 경우 명확한 유형의 근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전자우편(이메일)의 경우 계약이행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계약 실무에서 전자우편(이메일)을 통지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므로 이도 문서에 준하는 효력을 일차적으로 부여하고 이후 문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통지의 내용은 단기간의 국제회의용역 이행과정에서 즉시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질적 효력은 구두 등으로 실제 통지가 발생한 시점부터 효력일을 규정하였다.

제6조(계약금액 확정 등) ① 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은 체결시점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본과업에 대한 지급대가를 총액으로 확정하는 통칭 ‘총액확정계약’으로서 총액으로 확정된 계약금액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서 정한 계상율과 계상금액을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과 달리 당해 국제회의용역 이행에 소요되는 계약금액의 일부만을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부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용역 관련 수익사업(유료 등록비용 부과, 부스, 전시공간 등 판매)을 통해 충당하는 형태의 불완전한 계약금액 확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으로 집행해야 하는 지출항목 또는 계상되지 않은 지출항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토록 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르며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관계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 제6조는 본 계약이 계약체결 시점에 과업 내용에 상응한 대가를 확정하는 ‘총액확정계약’인 상황에서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른 변경계약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비용을 충당토록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계약금액을 불확정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은 계약에 따른 이행 의무와 이에 대한 대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한 공신력과 확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계약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또한, 확정된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경우 계약이행의 수월성 보장을 위해 지급 의무를 부과하여 운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 용역 업체의 운영 안정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계약이행 여건을 확보토록 하였다.

조문 해설

- 제6조는 전반적으로 계약체결 시점 과업 내용에 상응한 계약금액의 확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특히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은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에 과업 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계약금액 총액이 확정되는 통칭 ‘총액확정계약’으로서 과업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통한 변경계약 체결이 아닌 계약당사자 간(특히 발주기관) 임의적 절차로 확정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과업 내용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족분을 당해 용역의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 충당토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등 계약금액을 불확정하거나 계약체결 이후 비용부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 한편 확정된 계약금액 중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최대 70/100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따른 용역의 정상적 이행이 불가하거나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채권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배경 및 목적(취지)

- 제7조는 계약상대자의 기업운영 안정성 확보와 자금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면서도 채권의 이전에 의한 부실한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양도 승인 권한을 부여하여 적절한 계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채권양도에 대해서는 공공 및 민간 계약 모두 계약 조건상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

상대자의 입장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 또는 관련 의무 이행에 따른 대가와 관련한 상계 처리 등의 용도로 허용하고 있다.

조문 해설

- 제7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의 자금 운용 사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한 채권(대금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수행 및 현장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투입인력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사유를 제시하고 제5조에 따라 서면을 통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투입인력을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용역수행에 중대한 차질 또는 태만하여 용역추진이 어려울 경우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 이외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아래 각호의 사유와 같이 노동관계 법령(「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경우
2.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인사가 될 수 있는 경우
3.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남녀차별,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우
4.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력투입 및 교체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인력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본 용역 의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인력파견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배경 및 목적(취지)

- 제8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적절한 계약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인력의 투입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보장하면서도 명확한 사유 없이 임의적/자의적인 판단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용역 이행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상대자의 인력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운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의 계약이행은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수행인력을 통하여 진행되는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학력, 경력, 자격 및 수행 경험 등이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투입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발주기관은 용역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만, 무리한 인력교체 요구는 정상적 계약이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사유 제시 없이 발주기관이 임의로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무적, 내부 노무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운영상 애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조문 해설

- 제8조는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따라 행사 및 현장인력을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계약이행 과정에서 인력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교체 근거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국제회의용역은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용역 의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인력파견을 발주기관이 임의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및 관리 절차) ① 발주기관은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감독하거나 업무 감독 및 관리와 관련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업무이행의 감독 및 관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3조제13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이외에 추가적인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이행해야 한다. 단,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당초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사실상 본 계약에 의한 국제회의용역 이행 역무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는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 계약으로 본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는 국제회의용역이 용역 전체에 대한 하도급 또는 주요 역무에 대한 하도급이 아닌 다수의 리스, 렌탈, 인력공급 계약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성과 이로 인한 발주기관의 현실적인 승인 및 관리 감독의 한계를 고려하여 채택하였다. ▪ 행사대행용역 등 공공부문 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대상인 전체 과업을 하도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나, 용역 특성상 일부 역무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 제안서에 방송, 조명 등 단위 역무를 수행하는 전문용역 제공업체를 반영하여 협력업체로서 평가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평가과정에서 검토를 받은 것으로 보고 발주기관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관리의 수월성을 보장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는 전반적으로 국제회의용역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관리 및 감독책임과 이와 관련한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다만, 국제회의용역 수행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에 포함하여 평가받은 전문용역제공업체로서 본 표준계약서 제3조제14호에 따른 협력업체 개념의 계약이행은 하도급 계약 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어떤 경우에도 원사업자로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국제회의용역 역무 전부에 대한 하도급은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승인에 갈음한 사항 또는 계약체결 이후 승인한 하도급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비승인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제10조(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국제회의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단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하 “연장근로”라 함)을 지시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2조를 준용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른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연장근로 지시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와 기타 노동관

계법령을 위반하게 됨을 계약상대자가 제5조에 따른 통지의 방법으로 보고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여부와 적법성을 판단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등 추가 비용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위배되는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과업 내용의 변경, 추가 등에 같은 다양한 지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행사 및 회의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과 같은 연장근로가 필요할 수 있다. ▪ 그러나, 연장근로가 필요하더라도 근로 및 노동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명시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는 전반적으로 국제회의용역에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근로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 시간(법정근로 40시간, 주52시간 등) 준수와 연장근로 요구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비용 지급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도록 규정하여 대가 없는 과업수행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을 제한하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제11조(물가변동 및 기준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수조정율이 아닌 품목조정을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6절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4호(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과 관련한 수행인력에 대해서는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해당 임금의 변동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⑤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근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당해 노무비 증액분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는 공공계약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공계약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통해 당초 계약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나, 명백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계약당사자가 동의하는 계약이행 조건의 변화 등 사정이 변경될 때는 과업 내용과 금액을 조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회의용역은 6개월 이상 장기간 회의 또는 행사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최초 계약 시점에 산정한 특정 소요 품목의 가격(단가 등)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 국제회의용역에서는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물가 변동이 일정 수준 충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채택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는 공공계약법령 등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 물가변동이 기준값 이상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회의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확히 하였다. ▪ 한편 국제회의용역 특성상 투입되는 제2조에 따른 현장인력 등은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준노임 및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일 이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과업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추가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본 계약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의 순서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에 추가적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

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조정 및 사전수행 과정은 제5조 통지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6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는 계약 목적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과업 변경 요구 권한을 명시하면서 불명확한 과업 변경 절차 등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과업 변경 요구 또는 협의 미시행 등 요구 사항 미반영으로 인한 계약이행 부담 증가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 ▪ 특히, 과업 변경 시 계약당사자인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 의무를 명시하고, 동시에 추가과업 등에 따라 유발되는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임의적 변경 요구를 제한함과 동시에 계약상대자의 내부 대응(수행) 역량과 일정을 고려하여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는 국제회의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과업 내용의 추가, 변경, 삭제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과업 내용에 대해 변경 등 발주기관이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을 3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하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과업 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해석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표준계약서에 다른 해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상위 공공계약법령 순으로 적용토록 하여 제4조에 따른 효력 우선 순위 등을 규정한 조항과 합치되도록 하였다. ▪ 단, 이러한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에 추가적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기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시간당 노무비 단가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당사자가 아래 각목의 사유로 협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명목상 과업내용의 변경은 없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한 수행 조건,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상기 가목에 따른 투입인력의 변동 집행예산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단, 제11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 감액 등이 이루어져 이를 정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용 및 이윤율의 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상율을 적용하되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7항)에 따른 법정 계상율을 준용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에 물가 변동, 기준노임단가 변동, 과업 내용 변경 이외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특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채택하였다. 본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절차는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제회의용역 이행과정에서는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조를 통해 그러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는 본 표준계약서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물가 변동, 기준노임단가 변동, 과업 내용 변경 이외 발생할 수 있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를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조정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타 사유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오남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 가중 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타 사유를 2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제14조(지체상금의 부과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1.25/1000(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국제회의용역의 경우 1.3/1000)를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제16조에 의하여 검사 및 인수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지체상금을 적용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귀책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행의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이행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는 당초 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공계약법령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발주기관의 유형 및 용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여 적기 계약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체상금을 계약 지체가 아닌 용역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지체상금 부과 기준인 지체일수와 부과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또는 다른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는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계약완료일을 경과하여 지체한 경우 그 기간에 1.25/1000(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국제회의용역의 경우 1.3/1000)의 지체상금을 적용하되, 계약금액의 30/1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한도로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지체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용역을 이행한 부분으로서 발주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행한 부분이므로 이는 전체 계약기간을 경과 하더라도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지체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단,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기타 계약기간 연장청구 신청 및 승인에 따른 조치 등은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19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7절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4조제3항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명시적인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기간 변동 등 명백히 계약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계약 완료 이후 행사의 사후관리, 행정처리 등의 목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④ 발주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⑤ 발주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장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사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투입 및 교체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는 국제회의용역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계약목적물과 상관없는 자의적인 계약기간 연장 요구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 또는 간접비 등 대가 미지급 등 과도한 부담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는 전반적으로 국제회의용역 이행에 있어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연장 소요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발주기관은 국제회의용역의 성공적 이행 완료를 위한 목적으로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당해 계약 이행과 관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거나 그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운용 등에 제약이 가하는 등의 부담 요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6조(검사) ① 용역수행을 완성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20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8절 “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따라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용역의 일부를 이행하여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④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사후정산 보고서 제출 등 본 계약의 과업이행에

통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되지 않은 사유로 검사기간을 지연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 완료 후 용역수행에 대한 부분 또는 전부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와 인수는 대가의 지급 청구 등을 위한 선행 절차로 핵심적인 계약요건이므로 이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수행된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권한이 제한되고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등 후속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가지급의 선행단계로서 검사 절차의 실행에 있어 검사기간 등 기준을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라 명시함으로써 적정 기일에 용역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국제회의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검사 완료 및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여 임의적으로 설정한 장기간의 검사 일정으로 인한 대가지급 지연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는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라 국제회의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발주기관은 이로부터 14일 이내(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검사 완료 및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가 적정 기일에 용역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용역 결과물의 검사 결과 일부 또는 전부에서 계약위반 및 부당한 이행상황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은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그러나 당해 국제회의용역 계약목적물과 관계없는 사후정산 보고서 작성 등 발주기관의 계약 관리적 사무처리 등을 사유로 검사기간을 연장 및 지연하는 것과 이를 사유로 지체상금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7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단,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과업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직접적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을 포괄하여 안전 및 위험관리 책임을 부담토록 하거나 손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단, 행사로 진행된 경우로서 해당 행사 종료 이후 발생한 계약목적물은 제외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는 실무적으로 일부 국제회의용역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손해부담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라 할지라도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용역을 재수행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손해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부담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른 과업 범위에 한정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만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발주기관이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 역시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사고/문제/손해에 대한 배상(보상)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당해 용역 완료 이후에 계약상대자의 관리 범위 밖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부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제18조(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계약관리)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감염병 등),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 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본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업무일지, 회의록 및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와 제2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입증은 본 계약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3항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당사자 상호간 통지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발주기관이 제4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발주기관에 통보되는 날까지의 기 집행비용과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래 각호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해”로 보고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아닌 용역이 정지되는 경

우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1. 인건비: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행사인력(현장인력 제외)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경비: 기획서, 보고서, 기획시안, 도면, 무대 등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결과물의 제작, 설치, 구성, 창작 등에 소요된 재료비, 원고료, 설치용역비, 디자인비 등의 금액.
 3. 일반관리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에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4. 이윤: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에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이윤율을 곱한 금액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 비용으로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
- ⑥ 제5항 각호에 따른 손해 금액은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를 통하여 해당 비목의 지출과 결과물 산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라 통지된 날까지 예정된 수행일정 및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단, 수급사업자의 손해금액은 하도급 계약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손해액의 지급은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손해 금액의 산정에 있어 지출여부의 판단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1. 비용이 집행된 경우: 영수증, 세금계산서(영수), 입금증 등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비용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청구된 경우: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청구) 등의 대금 청구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경우에는 청구서의 청구금액과 관련된 용역 결과물(도면, 사진, 설계도, 영상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함)
3. 비용의 집행 및 청구사실이 없는 경우: 용역 결과물 또는 특정 용역결과물의 도출을 위한 중간 결과물만 존재하는 경우로서 용역수행 공정표(수행계획표 등)상 특정 완료기일에 최종 결과물이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간 또는 진행 중인 결과물(사진, 도면, 영상, 시제품 등) 및 관련 자료 제출(이 경우 손해금액은 용역수행 공정표상 해당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는 예상일정을 기준으로 최종 결과물에 계상된 비용에 산정일 현재 진도율을 곱하여 산정)

⑧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본 계약 대상인 국제회의용역이 기간 및 기 수행된 과업이외 다른 내용의 변동 없이 추후 재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보다는 과업기간의 연장을 통한 변경계약 체결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⑨ 발주기관은 제4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해야 한다.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는 국제회의용역 개최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항력을 사유로 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용역의 정지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분쟁과 해석상 이견이 크게 발생하여 이와 관련해 향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 관련하여 불가항력 사유를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부담의 주체는 발주기관으로 규정하여 계약상 권리가 제한되는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계약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 특히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손해부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또한, 발주기관이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부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는 시점까지 지출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이에 준하여 발생한 손해 역시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하였다. ▪ 손해액의 산정 방법은 비용이 집행된 경우, 비용은 미집행이나 대금이 청구된 경우, 비용의 집행 또는 청구사실이 없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따라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시점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 한편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될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재개가 예상되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같은 계약관계 종결 방식이 아닌 과업 기간 연장을 통하여 당초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손해금액 산정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의하여 불공정한 계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제19조(지식재산권 및 특허권의 귀속 및 사용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단 계약의 특수성 등으로 인한 경우, 당사자간 협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 이전 취득한 고유한 지식재산권으로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발주기관이 본 계약의 이행 및 관리 목적을 위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국제회의용역 입찰과정에서 타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업체에게 지식재산권 사용허가 및 관련 비용의 지급 등을 완료해야 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는 국제회의용역 수행에 활용하거나 산출된 결과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과 특허권의 소유 및 사용 등과 관련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 또는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을 무단으로 소유, 활용함으로써 계약이행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는 국제회의용역 전후 과정에서 산출되는 지식재산권과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와 사용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특히 당초부터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은 당해 계약의 이행 및 관리를 목적으로 발주기관이 별도로 사용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소유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다. ▪ 또한, 계약당사자가 지식재산권과 특허권의 사용과 관련한 책임 부담,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재산권 사용 요구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적 지원과 비용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 특히, 당해 국제회의용역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입찰참가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지급 없이 발주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제20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절차)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할 수 없다. 단, 사후정산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수행사실과 지출여부가 아닌 단가의 변동 등을 사유로 차액의 조정, 발주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각호에 따라 사후정산을 시행하더라도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할 수 없다.

1. 계약이행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과업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문서(계약당사자의 기관 공문)로 관련 내용을 상호 교환하고 용역 완료 후 대가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 중 산출내역서에 해당 과업과 관련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미수행한 경우(단, 미수행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선집행한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3. 행사 참가자와 연동하여 산정되는 항공권, 식음료비, 기념품 등 참가자의 변동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단, 참가 인원이 축소되어도 최소인원 보장조건,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조건 등에 따라 기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4. 기타 관계법령과 예규에 따라 정산의무(국민건강보험료 등)가 부과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에 소요되는 원가검토, 정산 등의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2항 각호에 따른 사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대상 비목(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은 제외), 기준(비용인정 요건 등), 정산 방법 등의 절차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확정된 후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⑤ 제4항의 구체적인 정산대상 비목,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의는 본 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의 입찰공고 당시 입찰공고서(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해당 사후정산 요건을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서에 미리 정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시 또는 계약체결 당시 이를 제시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 요건을 무효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시행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조정된 금액을 한도로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상 각각의 비목별 계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⑦ 발주기관은 제11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10호에 따른 사후정산을 적용할 수 없다.

⑧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는 국제회의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점 총액으로 확정된 계약금액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사전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지 않거나 사업예산 총액에 대하여 회계감사식의 사후원가검토 등을 적용하는 등 계약금액 확정 효력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 본 표준계약서 제3조제10호의 정의와 같이 계약체결 시점에서 이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금액 역시 확정하는 총액확정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임의적 사후정산 요구는 계약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다. ▪ 특히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통하여 사후정산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는바, 이를 활용하지 않고 편의상 총액으로 확정된 계약에서 임의적인 사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현행 공공계약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p>사후정산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발주기관(또는 원가검토기관)의 회계감사식 사후정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수증, 증빙자료 작성 부담 등 계약상대자가 경험하는 과도한 부담과 고충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는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은 총액확정계약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적용하지 못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 규정된 사항에 한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 특히 사후정산 요구는 입찰공고 시점 입찰공고문 등에 사후정산 요건이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후 입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시점 전후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특약으로서 해당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또한,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정산을 시행하더라도 관련 비용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함을 명확히 하고, 자의적인 사후정산 요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정산 대상 비목과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계약체결 이전 당사자가 협의 및 확정하여 계약문서에 첨부토록 규정하였다. ▪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조정된 금액을 한도로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상 각각의 비목별 계상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반영이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한편 국제회의용역 사업예산이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인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을 관리해야 하므로 보조금관리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산과 관계없이 본 표준계약서의 사후정산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1조(대가의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인 행사용역을 완성한 후 제16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제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⑥ 발주기관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조는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용역을 완료한 경우 본 표준계약서 제16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검사에 합격하면 그 사실을 첨부하여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계약법령 등과 달리 발주기관의 자의적 기준 적용으로 계약상대자에 대가지급을 지연하는 문제 등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대금지급청구서에 협력업체 등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가지급 계획이 포함된 경우 발주기관이 해당 협력업체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의 열위에 있어 계약상의 권리 보장이 취약해질 수 있는 수급사업자에 적기 대가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지급의 일반적인 절차, 대가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지급기한의 설정, 하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의 확인 등 대가지급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기한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5일을 추가 연장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지급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2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할 수 있다.

③ 하도급법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의 특성상 하도급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업체에게도 대가지급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관리 적정성 관점에서 국제회의용역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2조의 적용 대상은 아니나,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요청을 승인한 경우 하도급 대가지급 이행이 원활하도록 발주기관과 수급사업자의 일반적인 확인 및 협조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원칙적으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지로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대금 지급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리 수월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적정한 계약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계약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결과로서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의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사실을 5일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다만, 본 표준계약서 제2조의 '협력업체'의 정의, 제9조의 하도급 승인 조항과 연계하여 제21조에 따른 대가지급 신청 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제22조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 일반조건 제29조(지방계약 일반조건 제7절 “3”)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해제 등의 절차 적용으로 인하여 공공계약법령 상 보장된 권리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등 징벌적 처분의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채택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관련 처리 절차 등은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규정하였다.

제23조의2(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아래 각호에 따른 객관적으로 명백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 내지 제3호에 사유의 적용은 제18조의 불가항력에 준하는 현저히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본 계약의 유지를 위해 최대한 협의해야 한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도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 해소되어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본 계약을 통해 이행된 부분은 제외)으로 새로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연례행사에 준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보다 제24조에 따른 용역의 정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의2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의 정상적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채택하였다. ▪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상당한 수준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형으로 제시함으로써 계약이행 및 관리의 가시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 또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용역의 이행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상대자 역시 발주기관에 대한 선금 등의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계약관계 종료 이후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해석상 쟁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의2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계약당사자 간의 대금지급/비용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특히 해당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보다 계약상대자와 계약관계 지속을 위한 협의를 우선토록 규정하였다. ▪ 또한 발주기관이 적용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당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재개할 계획이 있거나 연례적 행사 성격인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종료(해제 또는 해지)하기보다는 제24조에 따른 용역의 정지를 가급적 우선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3조의3(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4조에 의한 용역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투입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타용역 금지 특약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금액과 별도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일로부터 발주기관이 해제 또는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일수)에 일할 계산한 계약금액(총 계약금액/계약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의3은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당사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계약금액, 기간의 대폭적 감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종료하여 계약상대자의 과도한 부담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 ▪ 특히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에 투입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타 용역에 투입하지 못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부담을 지도록 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관계 종료 시 타 용역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과도한 용역 정지 기간 설정 후 책임성 없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의3은 국제회의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지속을 통한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발주기관

에게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제23조의2에 따라 동일하게 대가 및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4조(용역의 정지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정상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용역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인력(행사참가인력 포함), 시설의 이용, 장비 활용과 관련하여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용역 정지가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용역 정지가 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용역의 정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해소된 날까지 제4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일반관리비를 정지가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의 종결에 이를 수준은 아니나 정상적인 용역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당사자(특히 계약상대자) 모두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특히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서 발주기관이 용역을 정지한 경우 기 지출한 비용 등 발생한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정지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손해부담 의무를 부과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관계의 종료

아닌 일시적인 용역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비용 지급 등과 관련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 다만, 용역의 정지는 계약관계의 종료와 달리 용역 정지가 종료되는 경우 대부분 용역이 재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약상 권리를 당초의 계약기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의 산정은 일반관리비를 정지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지연되면 추가적인 손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4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계약서, 관련 계약 문서 및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제5조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조의2는 발주기관이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계약관리 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 이행에 있어 발주기관이 공공계약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 이는 계약상대자 역시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계약관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상적인 용역 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실제 계약이행 과정에서 협상력의 열위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본 제24조의2 자체로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대로 이행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조의2는 전반적으로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에 있어 발주기관에 의한 용역정지가 아닌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용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계약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특히,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른 통지의 방법(서면)으로 이행 요청을 보장하고 발주기관은 이행계획을 14일 이내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성실한 계약관리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관리 및 규정 준수 등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의 연장, 비용지출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① 발주기관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단, 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기술지식 등"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은 본 계약 이전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과업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조는 발주기관이 국제회의용역 이행과 관련한 기술, 지식, 자료, 결과물 등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이의 활용과 공개에 있어 공동 소유권자인 계약상대자의 승인 권한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국제회의 및 행사를 하면서 정치, 군사, 외교적 중요 정보나 자료에 접근하거나 인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나 자료의 비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 또는 기관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계약상대자에 기밀 사항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조는 전반적으로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보고서, 정보 및 기술 지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기관이 사용 및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 받도록 규정하고, 계약상대자 또한 본 용역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기밀 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한편, 국제회의용역은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행사 참가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과업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제26조(낙찰자 선정 평가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을 위한 낙찰자 선정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서약서, 합의서 및 관련 평가자료 등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자료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10일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후 10일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재시정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경우 그 이행의 의무가 면제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능력을 평가받는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평가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제안한 바와 같이 이행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낙찰과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실행 가능성 없는 제안을 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평가받은 기술제안서에 반영한 내용과 평가기준 또는 항목에 따라 평가된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후 이를 그대로 투입 및 활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실무적으로도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평가에 유리하도록 과업 제안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 이행과정에서 빈번하고 과도한 과업 변경 요구를 통해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 요구하는 등 발주기관의 과도한 부담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조는 국제회의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우선협상대상자(또는 낙찰자)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또한 발주기관은 기술제안서 평가과정 등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안하거나 평가받은 내용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계약상대자가 10일 이내 시정조치를 미이행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용역을 중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10일을 부여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다만,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한 바를 이행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 등이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른 부당특약에 해당될 경우 관련 시정조치 역시 무효가 되므로 이를 실행하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였다.

제27조(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담보 등) ① 발주기관이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회사 등이 발급한 용역이행보증증권(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국제회의용역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마무리되어 발주기관이 검사 및 인수 후 대가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하자담보 책임은 없다. 단, 1년 이내에 국제회의용역 완료보고서, 백서 등 결과물(인쇄물 등)의 중대한 물리적 하자, 내용적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단 하자보수의 범위는 검사 및 인수시점 제출한 결과물에 한하며, 발주기관이 새로운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조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이행 불확실성이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이행 보증과 하자담보 관련 계약관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계약은 다양한 단위 역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전 준비 및 실제 국제회의 및 행사를 수행하는 복잡성, 전문성,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용역으로서 계약이행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발주기관은 이러한 본 용역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보증금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상대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조는 국제회의용역의 성공적인 용역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제출토록 하거나 제3의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 공제회 등)을 통해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토록 규정하였다.

- 또한, 국제회의용역의 경우 행사 및 회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직접적인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하자 또는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하자담보 책임은 부과하지 않되, 완료보고서, 백서 등 결과물의 중대한 물리적 하자, 명백한 내용적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만 1년 이내의 하자보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 특히 발주기관이 당초 과업내용 및 결과물과 직접 관련성 없는 새로운 요구나 과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제28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국가계약법 제29조(지방계약법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되, 중재 또는 분쟁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분쟁해결 방법을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이행 중에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배경 및 목적(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는 계약당사자간 지나친 자력구제 행위를 지양하고, 분쟁의 최종적 해결 이전 활용할 수 있는 협의, 조정 등의 유연한 해결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채택하였다. ▪ 국제회의용역의 안정적 계약이행을 위해 규정한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이는 최종적 해결 방법으로 법률소송을 통한 법원의 재판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이행의 안정성 저하, 계약당사자 간 과도한 긴장과 갈등 관계 형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 등으로 승수여부와 상관없이 직간접적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문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는 국제회의용역 계약의 당사자로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발생한 분쟁을 협의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나친 자력구제 행위를 통하여 분쟁이 악화하지 않도록 중재법에 따른 중재, 공공계약법령 등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만, 본 표준계약서에 따른 국제회의용역은 공공계약법령 등을 따르므로 관련하여 별도의 분쟁해결 방법을 적용토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별지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 당사자	발주기관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FAX) : 		
계약 내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	금	원정(₩)
	지체상금률	1.25(1.30)/10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계약이후 착수일) ~ 2021. 00. 00.		
	용역장소			
그 밖의 사항				
<p>발주기관(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입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입서류 :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6. 기타 계약문서(기술 및 가격협상 합의서 등)</p> <p style="text-align: right;">2021. . . .</p> <p style="text-align: center;">발주기관 -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상대자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p>				